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최종상 편집인 김영수 전화 041-968-2794 FAX 041-968-2989

특집 : 디지털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

권 두 언

위장수사제도 도입 확대와 인권 보장의 조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 한 중 교수

전문가 제언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길
-디지털 성범죄 중심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성폭력수사계
이 여 정 경정

위장수사 제도의 이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
-위장수사 경험을 중심으로-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추 호 정 경감

마약 및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

경찰대학 경찰학과
오 상 지 교수

자유기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재난관리 정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임 재 호 교수

연구소 소식



경찰대학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Total Solutions in Policing

치안정책연구소

위장수사제도 도입 확대와 인권 보장의 조화



정 한 중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정수사와 수사의 상당성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임의수사의 근거 조항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임의수사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수사의 방법도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수사비례의 원칙). 또한 수사는 신의칙을 준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수사비례의 원칙과 수사의 신의칙은 수사의 상당성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함정수사가 수사의 상당성을 갖춘 적절한 수사기법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함정수사는 마약범죄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 헌법적 측면에서 적정절차의 원리나 인권보장의 원리와 충돌할 수 있고, 수사의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허용범위에 대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 판례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에게 범의를 유발시켰느냐, 아니면 범죄 기회를 제공하였느냐에 따라 함정수사를 분류하고, 전자인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주관설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기관의 상대방에 대한 충동질 그 자체를 가지고 위법 여부를 따지자는 객관설이 있다.

2021.9.24.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함)」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 법률의 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관계, 다른 유형 범죄를 대상으로 도입가능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관계

위 법률에서 위장수사는 수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분류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데 이를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위 법 제25조의2 ①). 즉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과 대화나 거래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의 수사이다.

신분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다(위 법 제25조의2 ②). 즉 신분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를 넘어서 위장 신분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문서, 도화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 범죄자와 거래, 판매, 광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보다 적극적인 위장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수사방법의 필요성 내지 보충성을 소명하여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보다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 없는 위장수사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약 11개월 동안 183건의 위장수사 중 152건(92.1%)이 신분비공개수사를 실시하였고, 신분위장수사는 31건(16.9%)를 실시하였으나 범인 검거 인원은 261명 중 109명(41.7%)으로 신분위장수사가 범인검거에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위장수사는 위 법률에 근거한 수사방법으로 적법한 함정수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함정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주관설에 따르더라도 신분비공개수사도 개별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범의유발 수사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신분위장수사는 신분의 위장을 넘어 수사 방식도 범의자와 거래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방식의 수사는 범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수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범의유발형으로 밝혀진다면 그러한 수사방식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기소는 공소기각판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함정수사 이론과 판례가 위장수사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장수사의 한계는 적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것이다.

위장수사의 확대와 인권침해 가능성

미국에서 법무부 연방수사국 위장수사(undercover) 가이드라인은 주로 부패, 마약, 테러, 조직 범죄 등에 대한 위장수사를 대상으로 제시되었고 사이버공간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었다.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도 위장수사 투입의 실질적 요건, 투입의 절차, 위장수사관의 권한 및 형법 제184조b【아동음란물의 반포, 취득 및 소유】에 따른 범죄행위 수사를 위한 투입의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국가 입법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넘어서 성인 대상 사이버 성범죄, 마약,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를 대상으로 위장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 위장수사가 범인 검거에 매우 효과적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 방식 중 대상자와 거래, 광고 등과 같은 범죄 유도가 가능한 방식은 범의를 유발할 수 있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매우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는 수사의 신의칙에도 어긋나고 범죄예방과 사회방위에도 역효과를 유발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우선 마약과 전기통신금융범죄 등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범죄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부패범죄 등 검사가 직접 수사 착수를 하여 실질적으로 경찰 역할을 하면서 공소권까지 행사하는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는 범죄와 차이가 있다 점에서 도입에 반대한다. 확대 도입 시에도 미국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함정수사에 대한 무고한 당사자 보호 규정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 요건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여 당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위장수사 대상 범죄의 확대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대상 범죄의 확대는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미치는 범죄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확대할 때도 위장수사관 투입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SI](#)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길

-디지털 성범죄 중심으로-

이 여 정 경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성폭력수사계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ICT), 가상·증강현실(VR·AR) 등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시공간적 제약은 줄어들고, 각종 SNS·메신저 등 융합형 플랫폼을 포함한 사이버 공간은 무서운 속도로 무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 속에서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불안정한 관계를 쉽게 형성하고 유지되는 데 익숙해졌다. 이에 따라, 범죄 수법의 진화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성범죄를 포함한 대다수 범죄의 온·오프라인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텔레그램 이용 아동성착취(일명 ‘박사방’·‘n번방’) 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였고, 전국 경찰관서 현장 수사관들을 동원하여 ‘박사방’·‘n번방’ 운영자들과 주요 공범 등 디지털 성범죄자 총 3,57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97명을 구속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국회, 관계부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히 처벌받는다.’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시키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¹⁾이 발효되어 경찰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아

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방향(디지털 성범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1년 간의 위장수사 단속성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위장수사 제도 확대·활성화 노력이 우리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계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현황을 살펴보고, 위장수사 제도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위장수사 단속현황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총 201건을 승인·허가받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433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30명을 구속하였다.

[표1] 경찰 위장수사 단속현황

(기간: '21. 9. 24.~'22. 10. 31./ 수기통계로 변동 가능)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 촬영물 반포
		제작·알선 등	판매·광고 등	소지·시청		
전체	433명 (구속 30)	39명 (구속 8)	289명 (구속 18)	98명 (구속 3)	1명 (구속 1)	6명 (-)
신분 비공개	260명 (구속 13)	6명 (구속 4)	248명 (구속 9)	-	-	6명 (-)
신분 위장	173명 (구속 17)	33명 (구속 4)	41명 (구속 9)	98명 (구속 3)	1명 (구속 1)	-

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도자료(2022. 11.)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1)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활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²⁾ 제작, 유포 등의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범죄를 비롯하여 작년에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등의 범죄를 의미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성폭력처벌법 상의 불법촬영물과 달리,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포함된다는 점,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등의 구별 없이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면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상물의 촬영·유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의 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중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1년 간 위장수사가 가장 많이 진행된 범죄 유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으로, 전체 위장수사 실시 건수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는 한 명 검거 이후로 진척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후술하겠다.

또한, 위장수사 유형으로는 경찰관 신분을 범죄자에게 비공개하여 수집한 증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공무원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 문서, 도화 등의 작성, 변경, 행사가 가능한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초기 단계 위장수사에 많이 활용

2)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되고 있다. 수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상급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신분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를 넘어 문서·도화·전자기록을 작성, 변경, 행사하거나 계약·거래 등의 방식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방법으로,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상급수사관서의 검토를 받아 원칙적으로 검사 청구, 법원 허가(긴급시 48시간 이내 사후 허가)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위장수사 제도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익명의 범죄자를 특정하는 수사기법 대부분이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범죄자의 과거 흔적을 쫓는 추적 단서들을 수집·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경찰이 범죄자의 실체에 근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찰은 범죄자의 은밀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위장수사를 통해 범죄자로부터 직접 확보한 자료들은 기존 압수수색영장 제도와 결합하면서, 온라인 상 교묘하게 신분을 가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오프라인 상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등 수사의 시너지 효과가 단속결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위장수사 제도 발전을 위한 추진 필요과제로 논의되고 있다.³⁾

3) 직접 위장수사를 실시했던 현장 수사관들은 경찰 위장수사 제도 도입으로, (1) 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위장하고 수사대상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과거보다 선제적·적극적인 범죄대응이 가능해졌고, (2)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도 확보하지 못하는 온라인상의 증거를 위장수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수사대상자의 별건 범죄 혐의 확인 및 공범추적 등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나, (3) 수사 초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도 상당하므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출처: 2022.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도자료)

먼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허용되도록 관련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표2] 피해자 현황

(기간 : '22. 3. 1.~10. 31./수기통계로 변동 가능)

구분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비율	100%	38.1%	37%	19%	4.6%	1.3%
총인원	678명	258명	251명	129명	31명	9명

자료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도자료(2022. 11.)

올해 8개월 간 진행된 집중단속에서 확인된 피해자 678명 중 10대는 258명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하고, 성인은 420명으로 전체의 61.9%를 차지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를 실시하여도 성인 피해자가 꾸준히 확인되는 상황이다.

또한, 실제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등도 함께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 시에는 경찰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므로 판례에 근거한 함정수사 법리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 판례에서 인정하는 함정수사는 위장수사와 달리 적법한 수사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⁴⁾ 또한, 피해자의 고통은 연령에 따른 차등이 없으므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⁵⁾

- 4)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쟁점이 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원심에서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노2703 판결), 상고심에서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음(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 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4 다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입법화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특히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일부 범죄에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디

들째,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위장수사 제도의 근거법으로 적합한지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익명의 범죄자를 추적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위장수사 제도는 중요한 수사기법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 위장수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 여타 중대범죄까지 대상 범죄로 확대하기에 적합한 법률이라고 하기 어렵다. 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는 수사기법은 여러 범죄 수사에서도 활용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원화된 위장수사 제도 근거법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⁶⁾

셋째,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위장한 경찰관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⁷⁾

경찰은 온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범죄자의 대화 행위에 대해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적

-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 6)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3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수사는 이미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가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위장수사에 관한 별도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7)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용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가공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 문제로 귀결되는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전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 규정은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 전(前) 단계에서 범인 검거가 가능해진다. 즉,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초기 단계인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예방하는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⁸⁾, 호주⁹⁾, 독일¹⁰⁾ 등은 위장수사관에 의한 온라인 그루밍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례가 있다.

넷째, 신속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규정된 승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긴급·사후승인 없이 상급수사관서장의 사전승인만을 규정하고 있고, 신분위장수사는 영장 제도와 유사하게 경찰이 신청한 ‘허가서’를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초 발의안은 ‘경찰 내부승인 절차(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위장수사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 간 논의과정에서 위장수사는 기본권 침해 및 수사 남용 가능성이 높아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되면서, 국회에서는 2021년 3월 23일 위장수사 유형과 절차를 이원화하는 상태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위장수사의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신분비공개수사는 긴급·사후승인 등 예외사유 규정이 필요하며 현재 연장 없이 3개월로 한정된 수사 기간도 내부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신분위장수사는 IT 기술을 악용하여 경찰 추적을 우회하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호하여 관련 부처·유관기관·지역사회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신분위장수사에서 검찰 경우 절차가 사라진다면 법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경찰의 위장수사 착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지게 된다.

다섯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 신분위장수사 관련 실효성 있는 위장신분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동 조항은 신분위장수사를 위한 문서·도화·전자기록의 작성, 변경,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상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해주는 근거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일¹¹⁾, 뉴질랜드¹²⁾, 미국¹³⁾과 달리 관련 기관에서 위장 신분증 등을 발급해 줄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의 신분체계¹⁴⁾는 외국과 달리 국방, 선거,

8) 미국은 미시간주 형법(1931) 제750.145a조에서, 피의자가 아동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성관계와 같은 부도덕한 목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16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을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호주는 형법(1995) 제474.26조, 제474.27조, 제474.27A조에서, 16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을 명시하면서, 같은 법 제474.28조 제9항에서 제474.26조, 제474.27조, 제474.27A조의 목적상, 발송인이 자신이 통신을 전송하고 있다고 믿는 수령인이 발송인에게 실제 인물로 제시된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독일은 과거 형사소송법상 제110a조부터 제110c조까지를 위장수사 근거조항으로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같은 법 제110d조를 신설하여 형법 제176e조 제1항과 제3항(같은 법 제176조 내지 176d조에 규정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콘텐츠 배포·검색·소지 등)과 형법 제184b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2항(아동성착취물 배포·취득·소지 등)에 따른 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별절차를 규정하였다. 특히, 형법 제176b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위한 준비행위) 제3항은 불능미수 처벌규정으로, 행위자가 착오로 자신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독일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법 제20조 제2항과 동법 행정규칙 제20.21조에서, 다른 당국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수사관의 위장 신분 구축과 유지에 필수적인 관련 문서를 변경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뉴질랜드는 전자신원확인법 제12조와 출생·사망·혼인관계등록법 제65조에서, 새로운 신원에 부합하는 또 다른 전자신원증명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경찰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위장수사관의 신규 신원정보 생성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미국은 각 주법에 근거하여, 주 정부에서 위장용 신분증 등을 발급·제공하고 있다.
 14)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기초자치단체 소속 주

교통, 금융, 교육, 복지 등 모든 사회생활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가 타인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행정망 조회가 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당시 24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무단 조회하여 제공한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 위장수사관의 신분이 범죄자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법제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결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발생시키는 수요·공급요인 차단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적 수사(Proactive Investigation)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위장수사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경찰이 위장신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된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제3호는 신분위장수사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수사관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의 소지, 판매, 광고는 당사자의 동의나 경찰 내부절차 이행만으로 허용되는 수사방법이 아니라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사방법·절차·한계사항 등을 명시한 「위장수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위장수사 제도의 외연이 확대되고 질적인 변

민센터에서 주민으로 등록되면서 주민등록표가 작성되고 이와 동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17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센터 내에서 해당 정보들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등록제도를 기반으로 선거권과 병역의무 등이 발생한다.

화가 일어나야 하는 시점이다. 진화하는 범죄는 새로운 기술에서 시작한다기보다는 범죄자의 새로운 욕구 결핍에 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시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식되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서는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 및 도입방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관계기관·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한다.

온라인 수색은 국내 서버 내 저장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범죄자의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할 수 있어 범죄대응에 효과적이다. 다만, 온라인 수색이 경찰 수사에 있어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독일의 온라인 수색 규정¹⁵⁾은 자국내 저장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된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해외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까지 직접 접근·수집하는 수사 활동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에 관한 국가간 조약·협약 자체가 무력화되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¹⁶⁾

그간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을 강조했던 기관·단체들은 독일의 온라인 수색제도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효과적이나 강력한 비밀처분에 해당하므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피의자에 대한 절차적 기본권 침해 우

15)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b조는 온라인 수색의 실제적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용하는 정보기술적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고 이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미국도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41조(b)(6)에 근거하여 사이버테러, 금융범죄,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범죄 등에 대하여 온라인 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절차적인 면을 살펴보면, 치안판사는 국가·금융기관 해킹 또는 테러 등 특정 범죄의 경우 해외 서버 내 정보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한 영장을 수사기관에 발부하기도 하나 이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방식은 국민에게 무형의 두려움을 유발하고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 제시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검색제도는 시행국가에서 거론하는 법률적, 기술적 쟁점 분석이 필요하며, 국내 도입 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둘째, 현행보다 강화된 국내·외 플랫폼 내 아동성착취물 유통방지 체계 구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해 성착취물 유통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차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된 유통방지의무는 해당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나, 동 규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은 연방법(18 US Code 제2258 A조)에 근거하여, 통신사업자(ESP)에게 아동성착취물을 발견하는 즉시 NCMEC(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국립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¹⁷⁾에 보고·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NCMEC는 영상물의 위험 정도를 판단하여 법집행기관(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NCMEC, 통신사업자(ESP), 자국 또는 해외 법집행기관 간 협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체계는 실제 범인 검거를 비롯하여 피해영상물 유통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¹⁸⁾

17) NCMEC : 1984년 「실종아동지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실종·성착취 아동에 대한 정보를 법집행기관 등에 전달하며 해당 역할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

18) 미국 연방법(18 US Code § 2258A) 통신사업자의 신고요건

(a) 신고의무 : 통신사업자는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유통방지 및 감소를 위해 아동성착취물 유통 사실이 나 정황 등을 알게 되면 가능한 빨리 NCMEC에 신고하여야 한다.

(c) 법집행기관 보고 : NCMEC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자료를 검토 후 미국 내 법집행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외국 법집행기관, 인터폴 가입 외국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기관은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미국과 같이 더욱 강화된 공익감시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해외 각국이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점차 교묘해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위장수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범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은 국경·기술 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치안 영역의 한계를 넘어선 유연한 치안 거버넌스(Security Governance)를 구축하였고, 해외 법집행기관, 글로벌 IT 기업 등 수사 상황에 맞는 공조 파트너를 선택하는 등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PSI](#)

법집행기관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위장수사 제도의 이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

-위장수사 경험을 중심으로-



추 효 정 경감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위장수사의 활용

2022. 2.경부터 성폭력범죄수사팀에 소속되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진행하였다. 우리팀(성폭력범죄수사팀)은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고, 판매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판매내역 등을 바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자들을 검거, 특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위장수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규정된 위장수사 방법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또는 광고가 있으나,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의식 등을 고려하여 수사방법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위장 신분을 이용한 거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작성 등은 수사 실무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시도청 성폭력범죄수사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며 신분위장 수사 및 신분비공개 수사를 활용할 수 있다(물론 일선 수사관들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기법이라 자세히 전달할 수는 없지만 신분위장수사는 타인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 거래 등을 통해 범죄자를 특정 및 추적하고 특정한 범죄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고, 신분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임을 알리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하여 범죄자를 특정 및 추적하고 특정한 범죄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이렇듯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에 실제 기여하고 있다.

위장수사제도의 이점

위장수사활동이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수사활동이 되었다. 이는 현장 수사관들이 법률의 보호 아래* 위장수사 활동을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 위장수사(함정수사)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수사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사에 한정되어 있지만) 위장수사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기 이전 수사관의 위장수사 활동은 함정수사에 대한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시사항에 따라 그 적법여부가 달라졌다. 수사활동은 매번 기존 판시사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판시사항을 참고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는 수사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위장수사활동이 법률로 보장됨으로써 수사관들은 위장거래금을 전송하여 피의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혐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위장수사를 활용한 수사를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관들에게 물적 자원을 지원하였다. 법률이 없을 당시 함정수사의 한 방법으로 개별 수사관이 신분증을 위조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며, 수사용 휴대전화기기 등 전자기기가 없을 경우 개인이 구매하거나 개인 소유의 전자기기를 수사에 활용하여야 했다. 그러나 법률에 위장수사활동이

규정되었고,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분증 위조를 위한 기기를 보급하고, 위장수사 전용 휴대전화기와 노트북, VPN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었다. 만약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수사관의 위장수사활동을 보장, 지원하기 위해 공적으로 위와 같은 지원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위장수사제도의 아쉬움

위장수사 방법 중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승인 과정에 피의자를 놓칠 우려가 있다.

수사관이 신분을 비공개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와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판매자에게 위장거래금을 전송하고 그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는 등의 과정은 상급관청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이 있어야 적법한 증거수집 활동이 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심야에* 어렵게 대화가 이어진 판매자에게 수사관은 상급관청의 승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판매자는 기다림을 요구하는 사람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의심을 가진 판매자가 대화를 단절하고 숨어버린다면 그 판매자를 검거하기 위해 받아야 할 승인이 그 판매자를 놓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경험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는 18시 이후, 늦으면 자정 즈음 활동을 한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관은 퇴근 이후 개인 시간에 개인 공간에서 수사활동을 하는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또한, 위장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범위가 좁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못지않게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범죄 또한 중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별, 연령을 떠나 모든 성착취물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

소하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위장수사활동을 보장하는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한정되어 있다. 수사관이 성인이 피해자인 디지털 성범죄자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수사활동이 아닌 것이다.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수사활동이 아니라면, 수사관의 수사활동은 사안에 따라 증거능력을 달리 인정받을 우려가 있다. 수사관이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활동 중 하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장수사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위장수사제도의 아쉬움이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제도가 더욱 현장에 활용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신분비공개수사의 사후승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심야 시간 어렵게 대화를 이어간 판매자를 놓칠 우려가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한 판매자와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판매자가 신분을 비공개한 수사관을 실제 구매자로 신뢰하는 것이다. 판매자와 계속 대화가 이어진다면, 판매자는 수사관을 실제 구매자로 신뢰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신분비공개수사 활동은 더욱 성공적인 수사방법으로 될 것이다.

둘째, 피해자가 성인인 불법촬영물 피의자 수사를 위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촬영물 피해자는 몰래 촬영 당한 것은 물론, 해당 불법촬영물이 유포(재유포 포함)되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장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수사관이 위장신분을 일정 기간 실제 신분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법률로 신분 위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위장 신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이 해당 신분이 위장한 신분임을 몰라야 한다. 판매자가 구매 상대방의 신분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을 조zubin 사건을 통해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법률에 규정한 위장수사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였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위장 신분증은 실제 신분증과 다름이 없고, 사용하는 위장 신분으로 국내에 일정한 포털이나 금융 서비스 등의 계약이 가능한 등 실제 신분과 다름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이나 신체 등을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제작된 영상은 유포, 재유포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의 발달로 유포의 범위와 속도는 상당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제작에 이은 유포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가장 걱정하며 피해 고통을 호소한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인 제작, 유포자를 검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해결에 위장수사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대상범죄가 한정되어 있고 전체 위장수사 방법을 활용하기에는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 대상범죄를 넓게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한 위장수사활동 모두를 제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장수사제도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를 수사한 수사관으로서 위장수사제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PSI](#)

마약 및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



오 상 지 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들어가며

피해자나 목격자 또는 범죄와 관련된 자의 신고·제보 등에 의해 범죄혐의(Tatverdacht)가 인정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유형의 범죄에서 신고자·제보자의 진술은 당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고, 범인이 남긴 과거의 범죄 흔적은 전통적 강제수사인 압수·수색·검증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교통·통신 등이 고도로 발달하고 익명성(匿名性)이 특징인 현대사회에서 범인이나 범죄조직이 그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범죄를 계획·실행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전통적 수사의 단서·방법으로는 범죄혐의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 특정조차 어려울 수가 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를 전통적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명시하게 되었다. 행위자가 범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신고가 있기 어려운 마약범죄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는 단순히 1회적 범죄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도 계속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양상의 측면에서 N번방 사건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N번방 사건에서 경험하였던 수사실무상 한계는 마약범죄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이루어질 행위를 수사의 대상으로 하는 위장수사가 이러한 범죄의 수사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비밀리에 행해지는 위장수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행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가 명시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 법률에 근거를 두면 충분하다. 그리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 제한되는 기본권의 유형·범위·정도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실제적·절차적 요건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입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위장수사를 법제화하고 있는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위장수사의 적용영역

위장수사를 포함하여 개별적인 유형의 비밀수사를 이미 법제화한 독일어권 국가(독일 및 오스트리아)¹⁾에서는 소위 조직범죄 또는 조직적 범죄(Organisierte Kriminalität)를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로 보고,²⁾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그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조직범죄의 특징인 고도의 공모성, 조직원의 비밀유지 행동강령, 조직의 폐쇄성, 조직 내부의 분업성, 폭력행사를 통한 증인·피해자·조직원에 대한 위협, 피해자의 부재, (예를 들어 마약범죄의 경우) 관련자의 범죄 조직에 대한 의존성 등은 수사의 초기 단계(Beginnstadium)의 정보수집이나 범죄조직의 전체적인 구조 파악에 있어서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³⁾

- 1) 스위스의 경우 위장수사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für verdeckte Ermittlung), 우편·통신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zur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등 개별 법률이 있었으나, 2011년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Sabine, heimliche Ermittlungsmaßnahmen, p. 440).
- 2) Göppinger, Kriminologie, p. 549.
- 3) Rohe, Verdeckte Informationsgewinnung mit technischen Hilfsmitteln zur Bekämpfung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 pp. 5-6.

그리고 외부에 드러난 조직원의 개별적 범죄행위나 이와 관련된 자(가령 피해자·참고인)의 진술 등은 법률적 관점에서 범죄조직의 존재 내지 다수인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따라서 범죄조직의 구조와 조직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파악하고, 조직적인 차원의 범죄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전문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도 빈발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와 같은 점조직 형태⁴⁾의 범죄나 최근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마약범죄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분야의 범죄는 위에서 살핀 조직범죄 내지 조직적 범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방법으로 단서의 확보 내지 수사의 진행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는 결국 수사기관이 그 신분을 감춘 채 해당 분야에서 관련된 정보·단서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행동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기만적인 방법이나 몰래 관찰·감시하면서 범죄혐의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수사와 같은 비밀수사의 방법이 필요하다. 위장수사의 법제화는 결국 그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제약이 위장수사를 통한 효율적인 범죄의 수사과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

국에서 제조된 마약이 밀수를 통해 국내의 판매책을 통해 소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외국에서의 제조를 제외하고, 밀수·판매·투약·밀경에 대해서는 판례가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기회제공형 합정수사 이외에 위장수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범죄와 관련된 조직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회제공형 합정수사를 넘어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즉, 유통과 관련된 자들을 특정하고 개별적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조직 또는 조직적 행위와 그 가담자들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필요한 경우 기술적 장치의 투입 등) 미행·추적 등을 통해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관찰·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기회제공형 합정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조직을 단속할 수 있는 경우는 이론적일 수밖에 없다. 즉, 보이스피싱의 경우 마약범죄의 제조와 유사하게 범죄의 근원지는 외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필요한 대포통장·대포폰·인출책 등을 확보해서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편취한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 마약범죄의 유통총책 혹은 유통조직에 준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관찰·감시 등이 수반되는 위장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약·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필요성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일반적 검거현황을 보면 약 98% 이상이 판매·투약·밀경사범이고,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밀경사범을 제외한 80% 내지 90%가 판매사범과 투약사범에 해당하며, 제조·밀수사범은 2%에 불과하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제조의 특성에 비추어 암수범죄를 고려하더라도 검거현황에 의하면 외

4) 이기수,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범죄수사학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7호), 경찰대학, 2018. p. 5.

위장수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우리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로 볼 수 있는 관찰과 위장수사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국가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위장수사를 포함한 비밀수사는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현대의 범죄양상에 따라 인터넷범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도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 요건인 범죄혐의의 수준도 거의 공통적으로 최초혐의로 족하

다고 본다. 또한 관찰 또는 위장수사의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 실질적 요건으로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절차적 요건은 다소 상이하다. 즉, 오스트리아의 경우 관찰 및 위장수사에 법관유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독일의 경우 장기의 관찰과 피의자·주거에 대한 위장수사관의 투입에 법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아청법상 신분위장수사를 독일·오스트리아의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⁵⁾가 있다. 각국의 조문에 비추어 유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위장수사관과 오스트리아의 가중적 위장수사는 우리의 신분위장수사와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우선 아청법상 신분위장수사의 취지가 사법경찰관에게 전혀 새로운 가공의 신원을 제공하고, 이에 기반해 생활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그때마다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그 신원을 속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독일의 위장수사관과 오스트리아의 가중적 위장수사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데 그 초점이 있고, 위장수사관을 통한 특정한 범죄의 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독일어권 국가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신분위장수사에 보다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당해 입법례에서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의 경우 법관유보의 대상이 아니고, 독일도 일정한 유형의 위장수사관만 대상이 된다. 더욱이 범죄혐의의 수준도 상당한 혐의가 아닌 최초혐의로 족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입법이 이들 국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고·통제와 같이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사관들의 의견과 같이 수사의

5) 신상현,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 p. 126.

신속성·보안성이 저해되어 수사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특정한 피의자 또는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수사계획에 따라 신분비공개 또는 신분위장이 필요한 상황이 예상되면 사전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범죄와 관련된 단서·정보를 얻게 되고, 즉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급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수사의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결국 위장수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는 위장수사의 구체적인 실행방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 단기간 또는 1회성으로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허위의 신분을 말하고 수사와 관련된 정보·단서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⁶⁾라면 수사대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속이는 것에 한정되고 이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에 필요한 정보·단서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가급적 절차적인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수사를 위장수사관이 아닌 비공개로 활동하는 경찰공무원(Nicht öffentlich ermittelnde Polizisten : NoeP)이라고 하여 위장수사의 범주로 다루지 않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단순 위장수사로 절차적인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특정한 사람에 대한 장기간의 (미행·추적을 통한) 관찰·감시 및 이에 수반하여 비밀리에 촬영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위장수사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방식은 수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통제⁷⁾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6) 아청법상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주로 관찰·감시·위장수사의 기간이 문제되고, 현행 아청법은 최장 1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수사기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마약범죄 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의 특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최장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실제 수사에서 최장기간이 소요된 사례가 입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오며

우리나라의 법률은 위장수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장수사로 볼 수 있는 제도를 이미 규정한 아첨법상의 규정이 마약범죄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도입에 그대로 준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마약범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라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위장수사 이외에 수사의 비닉성이라는 표지를 구비하고 있는 관찰·감시도 넓은 의미의 위장수사에 포함시켜 법제화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첨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 위장수사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N번방 사건이라는 특정한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위장수사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장래에는 수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약범죄처럼 특정한 영역의 범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위장수사를 규정할 수도 있으나, 형법상 사기범죄로 분류되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특별법이 구비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수사는 결국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역할이 비단 디지털 성범죄·마약범죄·보이스피싱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전통적인 수사의 단서나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장수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장수사는 상황에 따라 단기간 또는 1회성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위장수사를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정도에 있어서 전자와 후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사기관이 즉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후자의 경우에는 절차적 통제를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PSI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재난관리 정책



임재호 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들어가며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역별, 장소에 따라 인파가 넘쳐나며 압사사고를 우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동기술 발달과 자가차량 보유증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정보가 어우러져 순식간에 인파가 한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빈집이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장소는 도심, 편의시설, 불거리, 병원, 학교 등 주거요건이 좋은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이 가능한 ‘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삶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중, 주말 인구의 이동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농민신문(‘22.11.14.)에서 개최한 토론회(지방소멸, 문제는 문화야!)에서 전문가들은 문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문화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구가 도심으로 떠난다고 진단하고 있다.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도시와 농촌 모두 의료, 교육, 문화에 대한 요구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간 이동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축제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은 ‘좋다’라고 평가받는 곳이 외딴 지역이라해도 찾아가는 것을 ‘성지순례’라 표현하며 방문을 자랑으로 여긴다. 방문한 이후 SNS를 통해 자신의 방문 결과를 알리는 작업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주민에 대한 위로잔치 차원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각종 축제가 끊이지 않고 개최되고 있으나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비현실적인 안전예산 책정, 감독업무의 소홀,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조 부족 등으로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이선기외, 2007). 문제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사

고예방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stampede’의 사전적 의미는 ‘군중이 놀라서 우르르 도망침’이다. 그동안 발생한 압사사고 대부분은 어떤 자극(화재, 소리침, 흥분 상태 등)에 군중이 일시적으로 좁은 곳으로 몰리면서 발생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의미를 반영하여 많은 군중이 운집한 상태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든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태원 참사사고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는데 비해 현장을 조정, 통제하는 기능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AI, Artificial Inetlligence)을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해줄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이다. 그동안 유사한 압사사고 발생시 현장대응인력의 역할이 체계적,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매뉴얼을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어보인다. 매뉴얼만 보강했을뿐 그 절차를 실행할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는 소홀했다. 이제는 인공지능기술을 이해하고, 현장에 직접 활용하여 효과적 안전관리를 담당할 공직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 증가

기후변화로 집중적인 폭우가 발생하여 하루 밤사이 반년치 강수량이 쏟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2년 여름 충남 부여에 하루 밤사이 200미리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다음날 다시 150미리 이상이 쏟아

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21년 부산초량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3명이 사망한 사고는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갑자기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당시에도 사전 경보,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고유형은 기존방식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갑작스런 인파몰림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역시 비슷한 유형들이 있어왔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실정이다.

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 가요콘서트 압사 사고로 리허설을 보기 위해 5000여 명이 몰려 사망자 11명, 부상자가 110명이 발생했다. 1990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인 메카에서 무슬림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 기간 순례자들이 터널을 먼저 빠져나가려다가 1,4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2005년 8월 이라크 바그다드에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모여든 상황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다’ 는 소리에 다리 위로 사람이 몰려 최소 960명이 사망했다. 2010년 7월 독일 뒤스부르크의 테크노 음악 축제에서 공연장 근처의 좁은 터널을 지나던 관객 19명이 사망했다.

이 모든 사고는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벌어진 ‘stampede’ 현상이다.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질서를 철저히 유지 하지 않는 경우 특정 자극이 발생하면 언제든 이런 참사가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전에 규칙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조정·통제 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군중들이 자극받고 흥분상태가 되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 군중관리 원칙>

구분	내용
밀도의 희박화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을 야기하게 되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
이동의 일정화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 방향을 향해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

경쟁적 사태의 해소	군중이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혼란상태가 발생하므로 안내방송을 통해 질서를 지키게 하여 이때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지시의 철저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하여 혼잡한 사태와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출처, 소방청, 행사장안전매뉴얼(2006)

위 <표. 군중관리 원칙> 에서 제시되었듯이 이미 정부부처별, 지자체별로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시 마다 업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담당자들이 이에 대해 숙지하고, 훈련하고, 부서간 연계활동이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절된 방식이라는 점이다.

첨단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한 예측과 정보제공

압사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인파 움직임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공유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등장하는 기술이 DX 라 불리는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전환)’ 이다.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DX는 ‘데이터에 기반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태원 참사 당시 1㎡당 16명 이상이 밀집했는데 프랑스에서는 1㎡당 4명 이상이 모이면 위험을 감지하고 분산이 필요함을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AI비전플랫폼’ 을 활용한 기술로 미아찾기, 교통, 인파해체, 범죄자 인식, 안전모 미착용감지 등 생활과 산업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과거와 같이 인력에 의존하면 피로도도 높아져 놓치거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비해 AI를 활용하면 10분의 1 수준의 인력으로 가능하며 더 효과적이

라는 결과가 있다. 방콕의 고속도로 관리를 40명 수준이 행하던 업무를 AI플랫폼 활용 후 4-5명 수준으로 가능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팜에서 AI를 활용하여 소의 눈동자, 씹는 상태 등을 관찰하며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현재 시행 중이다. 일정시간이 되면 사료를 공급해주는 것 역시 AI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 축산농가에게 여유시간이 만들어지고 피로도도 낮아지게 되었다. 일명 ‘소는 AI가 키울게요. 모임에 다녀오세요’ 라는 문구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농부는 테블릿 PC를 들고 원격으로 축사를 확인하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며 소들의 건강관리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AI 활용은 이미 생활, 산업, 농업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내년 예산중 14억을 투자하여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AI 활용이 가능해보인다. AI를 통해 주요관광지, 축제장소, 행사장, 운동경기장 등의 안전을 관리하면 ‘실시간 정보제공- 분석- 대응’ 하는 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통제,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17년 전 인파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업데이트를 해왔다는 사실에서 대응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실행할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경찰, 소방,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이 대응 매뉴얼에 대해 동일하게 이해하고, 대응절차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난, 안전분야 담당자에 대한 교육(심화, 활용수준)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 교육(기본이해, 지원절차 등)으로 나누어 모든 근무자가 CPR처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유지가 필요하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이상을 확보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양성, 보수) 교육프로그램에 재난대응절차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이해’가 아니라 ‘효과적 현장대응역량’ 이기 때문에 신

규자 양성, 승진자 교육과정에 「기본-실습-체험」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교육은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공직자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주변에 있는 국민과 가족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비번일 휴식중인 소방관이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를 구해주는 사례는 흔하게 접하는 일들이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안전과 위기대응에 일정 역량을 지니게 되면 문제발생시 대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재난안전교육과정에 AI, VR 등을 접목하여 가상체험과 실습을 병행한다면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할 ‘재난안전전문가’
양성과 인사관리 제도개편**

지방거점 국립대 등을 중심으로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계약학과’ 형태로 공무원 위탁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재난안전 전문가’를 집중육성 하는 교육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실제 많은 대기업과 첨단과학분야 기업들은 대학과 협력하여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내부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공무원의 인사관리에서 재난분야 근무자는 전문직형태를 병행하고 있지만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인사상 큰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재난부서 근무를 꺼리는 인식이 강하다. 재난안전전문가로 양성된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여 성과와 승진에서 본부 핵심부서 인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성과를 인정해주고 성장에 도움 된다면 지금과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전문가로 활동후 퇴직한다면 후배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래교수 신분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무와 이론을 전수 할 수 있는 기회도 갖을 수 있다.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장대응력을 높여주는 전문가로서 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소방, 경찰, 재난담당공무원 등)

에 대한 신뢰와 격려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이 지나간 후에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어?” 라고 짚어보기 시작하면 결함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밖에 없다. 모든 재난상황 이후 전반을 살펴보는 체계적인 결과 분석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표준화’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칫 매번 다른 기준이 등장한다면 재난분야 종사자들의 사기가 꺾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분석절차가 제시되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 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하되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를 놓쳐서는 안된다. 당사자 스스로 겪은 재난현장의 스트레스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자책과 미안함, 지친마음이 가득한데 조사와 비난을 경험하게 되면 소신 있는 활동이 어렵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재난 대응에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과 재난전문가 양성 그리고 재난분야 종사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함께 할 때 재난 대응 역량이 더 함양될 것이다.[PSI](#)

연구소 소식

■ 치안정책연구소 하반기 학술세미나 개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1월 16일(수) 13:30~17:00 서울 중구 통일로 114 바비영2 교육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 라는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1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장수사제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한국형 위장수사제도가 나아갈 길’, 마약사기범죄와 관련하여 ‘마약 및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학술세미나 자료집은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si.go.kr/police/main.do>)



■ 치안정책연구소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기타 석유제품’ 분야의 화재 잔해 시료 부문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KOLAS(코라스)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기타 석유제품’ 분야 코라스 인정 획득은 지문감정, 디지털 포렌식, 얼굴인식분석·영상분석 분야에 이어 네 번째이고, 경찰청 연구 개발(R&D) 성과물의 실증 연구를 통해 코라스의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 치안을 선도하고, 현장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더욱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2022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과제 및 정책연구과제 완료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치안종합 연구기관으로 효과적인 경찰활동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새로운 치안 트렌드에 맞춰 효율적인 경찰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과제가 완료되어 출판 과정에 있습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chajj76@police.go.kr, 041-968-2794)

연번	2022년도 책임연구과제	담당 연구관
1	범죄예측프로그램(Pre-CAS) 실효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용길
2	한국경찰의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연구(3종)	박재풍 패널센터
3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수용성 제고	장일식

	방안-시민, 경찰, 공무원중심으로	
4	테러의 지정학:지역별 발생원인과 공격 패턴에 따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권오국
5	2022년 경·검 범죄 범죄통계 개편안 학술 타당성 연구	김혜진
6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 조사표 개발	최은석
7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여성 피해자의 신변보호 정착을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김학신
8	책임수사 확립을 위한 통합수사팀 표준 조직모형 개발	정 응
9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통계적 관리방안	윤상연
10	경찰과 검찰의 대등협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차종진

연번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	담당 연구관
1	경찰특공대 효율적 운영방안 -작전 수행능력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중심으로-	권오국
2	폴리그래프 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상자 적합성 판단 기준 및 질문구성 등 검사조건 표준화 연구	김혜진
3	경찰 디지털포렌식 조직의 재설계 및 적정 업무량 분석 연구	윤상연
4	최근 UN PKO 정책 변화 분석과 한국경찰의 역할 확대 방안 연구	장지현
5	조사자 증언제도의 활성화에 대비한 실증적 연구	차종진

■ 「치안정책연구」 2022년 재인증평가 합격 및 제36권 제3호·제4호 발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3호(09.30)와 제4호(12.31)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게재 논문을 확정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아울러 「치안정책연구」가 2022년 실시한 재인증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로 등재지유지 판정(향후 6년간 유효)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치안정책연구」에 많은 관심과 함께 옥고를 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게재 논문은 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연번	제36권 제3호 게재논문
1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하에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요소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2	자치경찰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형사정책 상의 혁신에 대한 시사점
3	경찰의 전직대통령 경호에 관한 연구
4	외국인 비율이 동단위 범죄수준에 미치는 영향
5	보안메신저기반 마약조직의 등장과 마약범죄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연구
6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7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에 관한 소고
8	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
9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향 연구
10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11	PC 웹 브라우저 기반 탈중앙화 가상자산 지갑 카이카스의 니모닉 노출 위험

연번	제36권 제4호 게재논문
1	머신러닝 기반 한국 경찰 자살 생각 위험요인 탐색
2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자기통제력, 사회적 애착 및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3	‘피싱’ 범죄의 현황과 대응 방안 모색
4	잠재프로파일분석에 의한 도시와 농촌지역 분류 및 폭력범죄 영향요인의 차이
5	직무스트레스가 지역경찰의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
6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7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8	어두운 3요소 성격 측정 도구(SD3) 타당화 연구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소음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치안정책리뷰」 원고 모집 공고

본 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psi.go.kr)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곳

- 담당 연구관 : 차종진(편집팀)
- e-mail : chajj76@police.go.kr
- 메신저 등 : 치안정책연구소 차종진 연구관 (041-968-2794)